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즉시	-

담당 부서	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	책임자	책임자 송상호 (033-260-1617)
		담당자	주무관 위 현 (033-260-1614)

중소기업 R&D '도전은 쉽게, 연구는 자유롭게, 부정은 단호하게'
- 중소벤처기업부, 「R&D 제도혁신 방안」 마련 -

□ **'도전기회 확대', '자유로운 연구활동', '책임감 있는 과제수행'**을 위한 R&D 全 단계에서의 **제도혁신** 추진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R&D 전문가들과 **중소기업 R&D 성과 혁신**을 위해 관련 제도를 **대폭 개편**하는 내용의 **'중소기업 R&D 제도혁신 방안'**을 논의했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'중소기업 R&D 제도혁신 방안'의 **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**을 발표하였으며,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였다.

< 간담회 개요 >

- **일시·장소 :** 1. 12(목) 10:00 ~ 11:30,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(서울)
- **참석자** :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우수기업 대표자 및 R&D 전문가 등
- **주요내용** :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를 위한 R&D 제도 혁신방안 발표 및 의견 청취

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**도전·자율적 연구활동**을 통해 **확실한 성과**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'신청→선정→수행→종료' 등 **R&D 全 단계**에서 이뤄질 예정이며, **'역량있는 기업의 R&D 도전 기회 확대'**, **'자율·창의적 연구환경 조성'** 및 **'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'**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**혁신에 도전**할 수 있도록 **R&D 기회**를 더욱 확대한다.

부채비율이 1,000%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**재무적 결격 요건**을 **철폐**하고,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**내용·방법**, 기업의 **기술개발 역량, 선행 R&D**의 **실적과 성과**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**대폭 축소**한다.

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&D를 바라보고, **선행연구**와의 연속성 및 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, **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**해 **불확실성에 도전**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.

둘째, 과제 수행기업의 **자유로운 연구 활동**을 **보장한다.**

환경변화에 적기(適期)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**사업계획 변경**을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의 **'사전승인'** 방식에서 **'사후통보' 방식**으로 전환하되, 기술적·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**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**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**중단하는 절차**도 함께 마련한다.

또한, 인건비, 재료비 등 **직접비**는 사용범위 내에서 **기업이 자율적**으로 **사용**하고, 변경 시 **통보**하는 **방식**으로 **개편**된다.

다만,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, 내역,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.

마지막으로 **R&D의 책임성**을 강화한다.

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**국민경제에 기여**하는 것이 **기업 R&D 본연의 책임**이므로 **부정행위**는 **엄중히 조치한다.**
특히,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**연구 부정행위**에 대해서는 **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** 반영하고,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

이뤄진 경우 **대표자와 연구책임자**의 **추적 관리** 등을 통해 **단호하게** 대처한다.

또한, R&D 완료 후 과제 평가* 시 적용되는 **'우수' 과제 선별기준**을 **명확히** 하고, 추가 **인센티브** 부여한다.

* '우수, 보통, 미흡, 극히 불량' 4단계 등급으로 평가

반면,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**사소한 부주의**나 불가피한 기업의 **경영악화**로 인한 **과제 중단**은 제재에서 **삭제**하는 등 **제재 조치**를 **합리적 수준**으로 개편한다.

이영 장관은 "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**'중소기업 R&D 제도혁신 방안'**을 시행할 것"이라며,

"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**파격적 제도 개편**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**제도 운용**을 **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 **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**해나가겠다"고 밝혔다.

아울러, "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**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**에 대한 지원도 **본격 추진***하는 만큼,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**기술 기반 중소기업**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"고 덧붙였다.

* 민관 공동투자, 사업화, R&D 등 총 3,440억원 지원 및 정책자금·보증·수출 등 연계 지원

※ 행사 사진은 12시경 배포 예정입니다.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**중소기업 R&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 계획(안)**

□ 개요

○ **(일시)** 1.12(목) 10:00~11:30(90분)

○ **(장소)**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

○ **(참석)**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우수기업 대표 6인, 이혁재(서울대 교수), 노준용(카이스트 교수)

* 세미파이브(시스템반도체), 온코크로스(바이오), H2(2차전지), 클라우드브릭(사이버보안), 영창케미칼(반도체소재), 대모엔지니어링(기계부품)

□ 핵심 메시지

도전, 자유, 책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R&D 제도혁신

▶ 역량을 갖춘 기업이 **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R&D** 기회 확대

* ①재무적 결격 요건 철폐, ②정성지표의 폭넓은 인정, ③선행연구 연계성 확보

▶ 성과를 위해 **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자유로운 R&D** 환경 조성

* ①환경변화에 맞춰 R&D 방법과 내용 변경, ②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보

▶ 기술개발로 **국민경제에 기여하는 R&D 책임성** 강화

* ①우수기준 다양·명확화, ②연구노트 등 과정의 책임 강화, ③책임에 비례한 제재

□ 세부 일정

시간		주요 내용	비고
10:00~10:05	5′	■ 행사 개요 및 참석자 소개	기술개발과장
10:05~10:08	3′	■ 인사말	장관
10:08~10:23	15′	■ 제도 혁신방안 발표	기술혁신정책관
10:23~11:23	60′	■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	참석자
11:23~11:26	3′	■ 마무리 발언	장관
11:26~11:30	4′	■ 기념 촬영	참석자

참고2 **R&D 제도혁신 방안 주요내용**

Ⅰ 기본방향

○ ①"도전은 쉽게" → ②"연구는 자유롭게" → ③"부정은 단호하게" 중소기업 R&D 제도 혁신

○ **신청** → **선정** → **수행** → **종료**의 각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R&D 성과 창출 환경을 조성

[신청단계]	**✔결격요건은 최소화하고, ✔신청절차는 간소화해,**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R&D 참여 기회 확대
[선정단계]	**✔평가 전문성은 확보하고, ✔평가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,** 성과 창출 가능성이 많은 중소기업을 선정
[수행단계]	**✔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, ✔연구비 자율성을 극대화해,** 연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지원
[종료단계]	**✔R&D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✔우수기준을 다양화해,**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

Ⅱ 단계별 개선방안

1 신청 단계

○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, 잠재력만 충분하면 R&D 수행이 가능하도록 **부채비율 1,000% 이상 및 자본잠식 등 재무적 결격 요건 철폐**

- **모험자본 중심의 고성장 기업**의 기술혁신 도전 기회 확대

* 연구개발 중심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, 투자도 상환전환우선주인(RCPS)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

- **5억원 이하 과제에 우선 적용**하고, 5억원 이상 과제는 추후 확대

* 당분간 5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도 기업 편의를 위해 재무제표확인원(3월 이전), 이행보증보험 등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

○ **사업계획서**는 R&D 방법, 내용, 연구역량 등 평가에 직접 반영되는 내용 중심으로 **대폭 간소화**

* 29종의 현행 제출서류도 대폭 축소하고, 제출 시기도 최대한 협약 시점으로 조정

- 현재 30~40p 수준의 분량을 **연구개발 내용·방법**, 기업의 **기술개발 역량, 선행 R&D**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**20페이지* 이내** 작성

* (개편서식) 목표(1p), 방법(4p), 선행연구(3p), 연구역량(5p), 기술개발일정(2p), 연구비 사용계획(2p), 사업화 전략(4p) 등 최대 20p

○ R&D **사업 취지**와 **목적**에 부합하도록 **가점제도 개선**

- **기계적·일률적**으로 적용하는 현행 R&D **우대 방식 지양**하고, 연구개발 **목표에 부합**하는 범위 내에서 **사업별 특성**에 따라 별도 운용

*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위기 지역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우대 근거도 함께 마련

2 선정 단계

○ R&D를 '**기업 성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기술혁신 과정**'으로 파악해 지원과제 선정

- 도전과제 지원 확대를 위해 성공 가능성에서 벗어나 **"기술의 활용 가능성"** 중심으로 평가하고, **정성적 성능지표**를 폭넓게 인정

- '**성과 없이 반복적인 정부 지원***으로 연명하는 기업', '연구비 착복과 허위거래 등 **조직적으로 부정행위**를 저지르는 기업'은 철저히 검증

* 선행연구 실적과 성과,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"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" 평가지표를 신설해 중점 심사

○ 과제 내용과 평가자의 지식과의 간극을 좁혀 **평가의 전문성 확보**

- **과제분류 절차를 우선 도입**하고, 중장기적으로 **기업과 과제 매칭을 최적화**하고 기업의 **기술역량과 성과를 계량화**하는 시스템 구축

○ 단계별로 이루어진 이의신청을 전체 평가 절차가 **완료된 이후** 통합 실시해 **평가 기간**(1,000개 기준)을 현행 **12주에서 9주*로 단축**

* 과제 분류(1주) → 결격여부 확인(1주) → 서면 평가(3주) → 대면 평가(2주) → 이의신청 확인(2)

3 수행 단계

○ 급변하는 **경제·기술환경과 기업의 경영 여건**을 **기술개발에 즉시 반영**할 수 있도록 R&D **계획 변경**을 **폭넓게 인정**

- 기술개발 방법, 위탁연구 등 변경을 사전승인에서 **사후통보**로 전환

* 기술개발 목표, R&D수행주체, 연구책임자 변경은 현행과 같이 사전승인 유지

- 환경변화로 기술개발의 실익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비 환수 등 **제재 없이 중단할 수 있는 근거**도 함께 마련

○ 인건비·재료비 등 **직접비**는 범위 내에서 **자율적으로 사용**

- 일정 금액 범위의 출장비, 식비 등 경비성 비용은 사진, 회의록 등 제출 없이 증빙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

4 종료 단계

○ "우수, 보통, 미흡, 극히 불량"의 4단계 등급 중 보통 이상의 성공 과제 중 **우수 과제 선별기준**을 **명확히** 하고, 추가 **인센티브** 부여

- SCIE급 논문, 우수한 지재권, 국내외 수상 등 **기술적 성과 실현** 또는 협약 시 제시한 **사업 목표를 달성**하는 경우 우수 등급 부여

* 우수 등급은 과제 종료 5년 내 성과가 실현된 이후 기업의 신청에 의해 판정

- 과제 종료 직후에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**연구비 정산**과 **정량 지표 충족 여부** 등을 확인한 후 **보통** 또는 **미흡**으로 판정

* 미흡 판정 과제 중 연구노트 작성이 부실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으로 판정

○ R&D 과정에서 축적되는 지식은 큰 자산이기 때문에 **연구자의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**

○ **제재조치는 책임에 부합**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

-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 등 **사소한 부주의**, **불가피한 파산·폐업** 등으로 인한 **과제 중단**은 제재에서 제외

- **인건비 착복과 허위거래** 등 기업 차원에서 **조직적**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은 **대표자, 연구책임자 추적 관리** 등을 통해 **단호하게 대처**